

불법스팸 발송자 및 역무제공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

A Study on Legal Framework for Disgorgement of
Unjust Enrichment from Illegal Spam Senders and
Service Providers

2025. 12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율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불법스팸 발송자 및 역무제공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

(A Study on Legal Framework for Disgorgement of
Unjust Enrichment from Illegal Spam Senders and
Service Providers)

허승진/박상현/김시온/홍인기/양희원

2025. 12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율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불법스팸 발송자 및 역무제공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법무법인(유) 율촌

총괄책임자: 허승진 변호사

참여연구원: 박상현 변호사

김시온 변호사

홍인기 변호사

양희원 변호사

목 차

요약문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제2장 불법스팸 관련 규제 현황	4
제1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	8
1. 개 요	8
2. 법제 현황	9
제3절 해외 불법스팸 관련 규제	13
1. 미 국	13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4
3. 일 본	14
제3장 현행 불법스팸 규제의 주요 문제점	16
제1절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대상의 제한 필요성	16
1. 개 요	16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7
제2절 중첩적 위탁 구조 개선의 어려움	18
1. 개 요	18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8
제3절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불명확성	19
1. 개 요	19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20
제 4 절 불법스팸 전송자의 식별 어려움	22
1. 개 요	22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23
제 5 절 현행 제재 규정의 정비 필요성	24
1. 개 요	24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25
제 6 절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필요성	26
1. 개 요	26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26
제 4 장 불법스팸 규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	32
제 1 절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관련(제50조의3)	32
1. 개정 이유	32
2. 개정 내용	33
제 2 절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관련(제50조의4)	34
1. 개정 이유	34
2. 개정 내용	34
제 3 절 불법스팸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관련(제50조의6)	38
1. 개정 이유	38
2. 개정 내용	38
제 4 절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관련(제50조의9)	40
1. 개정 이유	40
2. 개정 내용	40
제 5 절 몰수·추징 규정 관련(제75조의2)	48
1. 개정 이유	48
2. 개정 내용	48
제 6 절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관련(제76조)	49

1. 개정 이유	49
2. 개정 내용	49
제 5 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 비교·검토	51
제 1 절 위원회 대안의 불법스팸 방지 관련 주요 내용	52
제 2 절 위원회 대안 및 본 보고서상 개정안의 비교·검토	54
1.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 관련	54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57
3.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57
4.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산정기준	58
제 6 장 결 론	59
참고문헌	60
[부록 1] 불법스팸 관련 규제 법령－「정보통신망법」(발체)	61
[부록 2] 불법스팸 관련 규제 법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발체)	66
[부록 3] 불법스팸 관련 규제 법령－「전기통신사업법」(발체)	68
[부록 4] 불법스팸 관련 규제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발체)	71
[부록 5] 불법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	75
[부록 6]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발체) ..	104

요 약 문

1. 제 목

불법스팸 발송자 및 역무제공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

2. 연구의 목적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스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24년 11월 정부는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불법스팸 발송 단계의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시장 정상화, 스팸 차단 강화, 과징금·범죄수익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는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2025년 9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을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법제화되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 발송의 경제적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여 관련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현행 과태료 중심의 제재는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며,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의 검토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스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의무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의 부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몰수·추징 등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불법스팸 생태계 참여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재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을 검토 및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불법스팸 관련 사업자 의무 규정의 구체화, 과징금 부과 근거의 신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다.

4. 연구결과

제2장에서는 불법스팸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신설된 전송자격인증제도 및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스팸 관련 주요 규정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불법스팸 제도가 나타내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대상의 제한 필요성,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불명확성,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 부재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제4장에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대상을 전송자격인증을 보유한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죄이익의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정비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5장에서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주요 의원 발의안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비교 및 검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주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검토내용을 제시하였다.

5.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불법스팸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의 비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정 필요성 및 그 구체적 내용 및 예시를 제안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한 불법스팸 규제의 현실화가 향후 불법스팸 감소와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Legal Framework for Disgorgement of Unjust Enrichment from Illegal Spam Senders and Service Providers

2. Objective of Research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llegal spam has continued to increase, leading to serious consequences such as personal data breaches and financial fraud.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Government-wide Plan to Combat Illegal Spam” in November 2024. This plan outlines strong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the recovery of unjust gains at the spam-sending stage, normalization of the bulk messaging market, enhanced spam filtering, and stricter san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asset forfeiture. Furthermore, in September 2025, an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troduced a legal certification system for bulk message senders to prevent unqualified operators from entering the market.

Despite these efforts, the economic incentives for illegal spam persist, and related violations have not been eradicated. This highlights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fine-based approach and underscores the growing need for stronger and more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s.

To fundamentally deter participation in the illegal spam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specific obligation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the “Network Act”), and to introduce stricter measures such as administrative sanction and confiscation or collection of profits gained through vio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mendments to the Network Act that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uch enforcement mechanism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Network Act, including: (i) Specification of obligations for businesses involved in illegal spam, (ii)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ii) Introduction of grounds for the confiscation or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4. Research Result

Chapter 2 examines the cur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related to illegal spam,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newly introduced transmission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rticles 50 to 50-8 of the Network Act, which regulate key aspects of illegal spam.

Chapter 3 identifies major issue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such as the need to restrict the delegation of advertising transmissions, the lack of clarity regarding required anti-spam measures, and the absence of a mechanism for recovering economic gains derived from violations.

In Chapter 4, the study proposes specific amendments to the Network Act, including: limiting advertising transmission delegation to certified entities, introducing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allowing for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from illegal spam activities currently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nd reorganiz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administrative fines.

Chapter 5 compares the proposed amendments from this study with major legislative proposals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dentifying key issues for legislative debate and presenting relevant insights for review.

5. Expectations

This study presents a balanced regulatory framework that strengthens enforcement effectiveness while ensuring proportional responsibility and procedural fairness, all in pursuit of the public goal of eradicating illegal spam. By highlighting the need for legislative reform and providing concrete proposals and examples, the study aims to support the effective revision of the Network Act.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reforms will contribute meaningfully to reducing and preventing illegal spam in the futur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이용한 불법스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무분별하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의 유출, 금융사기, 범죄가담 등으로 연결되는 스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휴대전화 및 이메일 사용자들의 월 평균 불법스팸 수신량은 16.43통으로, 2023년 하반기 대비 2.85통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스팸 관련 현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스팸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6~7월 불법스팸 관련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2024년 11월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은 불법스팸 전(全) 단계에서의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수신 차단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주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범죄 수익 몰수는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불법스팸 발송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불법스팸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불법스팸의 대부분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바, 2025년 9월에는 부적격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존에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스팸을 유통시키는 부적격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성 정보 전송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투자유도 등 금융관련 광고, 도박, 통신가입 광고, 불법대출 광고 등 유형이 2024년 1분기 기준 전체 불법스팸의 62.6%를 차지하여, 금융사기, 범죄가담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및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스팸 문제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불법스팸 유통 참여로 인한 경제적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가 그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미미하여, 불법스팸을 통한 수익 창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실효성 있는 규제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법체계 하의 과태료만으로는 불법스팸을 유통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 유인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불법스팸 유통과 관련된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범죄 수익 몰수 등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스팸 생태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유인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스팸과 관련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의무규정의 구체화 및 몰수, 추징, 과징금 부과 등 효과적 제재의 도입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불법스팸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미비점을 발굴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법스팸을 방치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또한, 위 의무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특히 제재의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스팸과 관련한 주요 규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 등 제재에 대한 근거조항의 마련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위 내용을 포함한 불법스팸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제도 개선 연구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스팸정책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의견 및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개정 필요성 및 개정 조문의 구체적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정안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제 2 장 불법스팸 관련 규제 현황

제 1 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50조에서 제50조의8에 걸쳐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용자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동의 수취 및 고지 등 기본적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제50조),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50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발송 등에 대하여 역무 제공 및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50조의4)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차단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50조의6), 영리목적 광고성 프로그램의 설치나 광고성 정보 게시에 관한 제한요건(제50조의5, 제50조의7)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 즉 이른 바 악성스팸의 전송 금지에 대한 내용 역시 규정하고 있다(제50조의8).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 5. 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와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전기통신사업법」

1. 개 요

「전기통신사업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이 지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특히 대량문자전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그 적격 여부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이에 2025. 9. 18.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법 제22조의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미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법 제22조 제4항)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2. 법제 현황

2025. 3. 18.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6개월 후인 2025. 9. 19. 시행되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법 제22조의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법 제22조 제4항)
- 전송자격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고,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의11 제4항, 제27조 제1항 제3호의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3의6.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한편,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5. 5. 30. ~ 2025. 7. 9.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령안은 ①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구체화하고, ② 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며, ③ 등록요건 미준수 및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④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5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9조의2(등록요건 준수 여부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를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요건 변경에 대한 사항
2.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에 대한 사항
3.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사항
4. 재무 건전성에 대한 사항
5.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항
6. 이용자보호 계획서에 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1항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11제2항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
2.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취소사유 해당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서면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와 방법을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라)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마)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 바)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의 위·변조 방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 보호지침 중 다음 각 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나) 취약점 점검 다)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라) 로그관리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 및 차단 관련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

고, 2025. 5. 3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해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직원을 별도로 1명 이상 둘 것 1)의2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공표할 것 2) (현행과 같음)
다.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라.~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전송자격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를 제출할 것(단, 전송자격인증서는 발급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3절 해외 불법스팸 관련 규제

1. 미 국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불법스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며 스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러한 관련 법령은 유·무선 전화(텔레마케팅)와 로보콜(Robocall),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시지 등 매체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 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TCPA) 및 로보콜 남용 범죄 단속 및 규제에 관한 법률(Telephone Robocall Abuse Criminal Enforcement and Deterrence Act, TRACED Act)

미국은 1991년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시행하여, 자동 발신 시스템(Autodialer)과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사용하는 유선·무선 전화 텔레마케팅 및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에게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간대(수신자 기준 오전 8시 - 오후 9시)에 한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한편,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특히 로보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은 2019년 12월, 기존의 TCPA를 보완, 강화하는 내용의 로보콜 남용 범죄 단속 및 규제에 관한 법률(TRACED Act)을 시행하였다. TRACED Act는 ① 고의적으로 잘못된 발신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TCPA를 위반한 로보콜 발신 시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FCC)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발신자 인증이 되지 않은 전화 또는 사기 의심 전화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신 전 차단(pre-blocking)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

2) 손종모, 임효창,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제19권 제6호, 2021. 12., pp.39-40.

- 스팸방지법(CAN-Spam Act)

한편, 2004년부터 시행된 스팸방지법(CAN-SPAM Act)은 광고성 정보의 헤더(From, To, Reply-To) 정보가 정확할 것을 요구하며, 광고 또는 상업적 내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향후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수신 거부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수신 거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여, 수신자의 의사와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EU에서는 명확한 사전동의(Opt-in) 원칙을 바탕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을 규율하고 있다.

1997년 유럽 원격판매 지침을 도입하여,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 전송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였다. 이후 전화, 팩스 뿐 아니라 이메일 등 새로운 전자 통신 영역에서 발생하는 스팸 등 문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Directive 2002/58/EC)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지침은 ARS 자동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전자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일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신자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할 것 역시 요구하고 있다.

3. 일 본

일본의 불법스팸 규제는 “특정 전자우편의 전송 등에 관한 법률”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률은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SMS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전송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얻을 것을 요구하여 사전동의(Opt-in)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전송자는 메시지 본문에 ① 전송자의 명칭(이름) 및 주소, ② 수신 거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여야 하며,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수신자에게는 이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전송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는 최대 3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3장 현행 불법스팸 규제의 주요 문제점

제1절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대상의 제한 필요성

1. 개 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때, 수탁사업자의 자격 내지 요건 등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여러 단계의 위수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수탁자들의 자질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의 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제한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제도 개선 연구반에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검증된 수탁자를 통한 적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의 전송자격인증은 대량문자 전송을 위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등록조건인 바, 대량문자전송에 한하지 않는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칫 대량문자사업자 이외의 다른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 외의 방법(앱 푸시, 전화권유 판매업자 등의 광고대행업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절 중첩적 위탁 구조 개선의 어려움

1. 개 요

실무상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는 다단계의 복잡한 위수탁구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문자재판매사에게 문자의 전송을 최초로 위탁하고 나면, 해당 문자재판매사가 다시 다른 문자재판매사에게 해당 전송 업무를 재위탁하는 등 중첩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첩적 위탁 구조는 불법스팸 등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실제 전송 주체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추적하는 등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전송 과정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의무주체나,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주체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도 역시 장애 요소가 된다.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전송 구조를 명확히 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의 거래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수탁 관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일례로, 상술한 바와 같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자격 기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무분별한 위탁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재위탁 시에는 최초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의무적으로 수취하도록 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재위탁 제한 및 그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 재위탁을 제한하고 위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제3절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불명확성

1. 개 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 5. 28.>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와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의무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는 수범자에게 자신의 의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여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적 제재 등을 부과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가. 하위법령 위임을 통한 구체화 필요성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이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응당의 제재를 하기 위하여는 의무내용을 우선 명확히 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위 관련 입법례(「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하여, 법률에서 필요한 조치의 대략적인 내용을 열거하는 한편,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 략)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중 략)

-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나. 역무 제공 거부 조치와 그 외 조치의 구별 필요성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서는 역무제공 거부에 관한 조치와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의 취약점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필요한 조치”로 총칭하고 단일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 체계로 인하여 행위 유형별 의무 내용과 책임 주체가 더욱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역무제공 거부 조치는 실무상 신고 등으로 발송자의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무제공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사후적 의무를 의미하는 반면,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의무는 각 위반행위 내지 조치 필요성의 발생 시점과 그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조치가 광범위한 바, 이처럼 역무제공 거부조치와 기타 취약점 개선 조치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 손해배상 규정의 적용 면제

「정보통신망법」 제60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50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른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취하는 경우 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여도 일부 오차단 등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바, 「정보통신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 근거는 당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나, 도리어 이 규정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발송 등이 의심되는 사정을 발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 망설이게 되어 불법스팸의 효과적 차단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법령상의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합리적으로 취한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 4 절 불법스팸 전송자의 식별 어려움

1. 개 요

현재 다수의 문자재판매사는 이용자(광고성 정보 전송자)와의 거래 시 현금 결제·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바, 불법스팸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전송자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 안내서(2015)에서는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용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 이용·도용 등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포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번호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식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송자 식별의 어려움은, 역무제공 거부 조치 등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전송자의 불법스팸 전송을 차단하는 데에도 제약 요소가 된다.

일례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VoIP의 정보를 바탕으로 매달 악성스팸 발송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를 선정하고, 이후 해당 문자재판매사에 접수된 스팸 목록을 매일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전송자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전화번호의 지속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스팸 목록을 바탕으로 차단, 이용정지 등 실효적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현재 현금 결제·무통장 입금 방식의 거래로 인해 불법스팸 전송자 식별·추적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계좌이체·카드 결제 등 송금 주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의 활용을 문자재판매사에 의무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문자재판매사가 자체적으로 강력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문자재판매사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불법스팸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전송자의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 5 절 현행 제재 규정의 정비 필요성

1. 개 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제50조 내지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제50조 제5항 위반행위, 제50조의8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해당 사실을 직접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제재 규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다만, 현재 제재 체계가 불법스팸 유통 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유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제재 체계전반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가.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제50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무 내용이 명확한 역무제공 거부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되, 취약점 개선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을 고려, 시정명령을 통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형사처벌 시 몰수·추징 근거 신설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특히 경제적 유인이 크게 작용하며, 이에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지 못하여 근본적인 위반 유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 또는 추징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6절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필요성

한편, 위 형사처벌 조항과 관련하여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범죄수익 몰수추징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1. 개 요

현재 불법스팸 전송의 큰 유인 중 하나는 경제적 이익에 있는 바, 실무상 불법스팸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현행 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된 이후에도 사업을 재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의 제재 규정이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억제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가. 과징금 부과 범위

과징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그 구체적 부과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50조 내지 제50조의8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범위를 가능한 넓게 규정하는 안,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0조 내지 제50조의8 위반행위 전반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방안

특정 위반행위를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즉 사업자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전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써 위반행위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제50조 내지 제50조의8 위반행위 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제50조 제1, 제2항 위반), 형사처벌 대상인 수신거부 방해(제50조 제5항 위반),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제50조의8 위반) 등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처럼 과징금 부과대상을 넓게 설정하는 것은 불법스팸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경미한 위반행위나 이미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과잉규제의 우려는 행정청이 내부적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 또는 과태료 등 다른 제재와 과징금 사이에 어떤 제재 수단을 활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위법성이 높은 위반행위를 선별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방안

행정 제재의 비례성을 고려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선별해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던 주요 조항 및 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50조: 제50조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의 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업무처리 상의 과실이나 오류 등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영세한 사업자에 의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50조 위반행위 전체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는 대신 각 항에 대한 위반행위 중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큰 행위만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제50조 제1항, 제2항: 적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인 “동의”를 갖추지 않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으나,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영세 사업자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제재 신설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제50조 제3항,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표기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경미한 과실이나 부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 제50조의3: 위탁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보이는 점, 나아가 관리·감독 의무 위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제한 요건이 신설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 요건 위반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역시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50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본 조항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문언 상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의무를 명백히 부여하는 대신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0조의7: 업무처리 상의 과실이나 오류 등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이용자가 게시한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바, 기준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부당이익)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방식,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방식 등이 존재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과징금 기준금액으로 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의 비례성이 높아지고 직관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자의 유형 및 규모가 다양한 바,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방식은 위반행위자별 효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일례로, 사업부문이 다양하고 매출규모가 큰 이동통신사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충분한 제재효과가 있는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경우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과징금 산정 기준의 결정 및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책에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 하한액을 설정하는 방안:** 사업 규모가 작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최소 부과 금액인 하한액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산출된 정률 과징금이 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반드시 하한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영세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넓게 설정한 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관련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선정하면서도, 그 구체적 범위를 파악하고 입증하는 데 따르는 행정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 정액 과징금을 정하고, 정액과 정률 과징금 중 더 큰 액수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관련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미할 때 보다 합리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령에 미리 정해진 정액 과징금 상한액과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출된 정률 과징금을 모두 계산한 뒤 최종적으로 더 큰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체 매출액이 높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액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는 정률로 과징금을 적용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다. 기타 제재와의 병렬적 운용 필요성

(1) 과태료 및 형사처벌과의 병렬적 적용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 일부에 대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미 제재규정이 존재하는 위반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포섭할 필요성 및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제재규정이 불법스팸의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한 점,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의 특성상 개별 의무 규정별로 위반행위의 위법성 경중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구체적 행위 양태나 위반행위자의 유형 등에 따라 중대성이 복합적으로 나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 이후,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 등을 통해 과징금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시정조치와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특히 사업자의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의무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제50조의4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선행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스팸 발송행위를 인지한 뒤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유의미한 차단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불법스팸의 경우 즉각적인 대처 및 차단 등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그 미조치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과징금 부과 예외 규정

한편,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던 상황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일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정상적인 문자 수발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오차단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안을 과징금 부과 시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책의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장 불법스팸 규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현행 불법스팸 규제의 주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검토의견 및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하에서는 현행 규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해당 개정안의 내용 및 그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관련(제50조의3)

1. 개정 이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대량 문자 발송을 하려는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제22조의11 제1항), 이를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을 대량문자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격의 사업자만이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인 문자재판매사 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송자격인증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수탁자의 전송자격인증 취득을 요구한다면,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광고성 정보 전송 발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바, 전송자격인증을 조건으로 하는 위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정 내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이를 수탁자가 대량문자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제한조건의 적용 대상을 필요한 범위 내로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신 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절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관련(제50조의4)

1. 개정 이유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 안전성 및 명확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4. 3.)에서는 제50조의4 제4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제41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2017. 1.)에서는 “필요한 조치”의 유형을 ① 역무제공 거부조치, ② 정보통신망 취약점 개선조치, ③ 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 ④ 그 외의 필요한 조치로 구분하고 있다(제17면).

이에 현재까지의 실무상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고 제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위 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의 대략적 내용을 법률상 구체화하는 한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2. 개정 내용

필요한 조치의 유형 중 역무제공 거부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이후 특정 전송자가 다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기 쉽도록 하는 결함 내지 허점을 제거 내지 보완하는 등의 사전적·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여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역무제공 거부조치의 경우 제50조의4 제4항 제1호에,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의 경우 제50조의4 제4항 제2호에 각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취

약점 개선조치의 세부적 유형을 제2호 아래에 나열하였다.

또한, 제50조의4 제4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등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법률 수준에서 미리 정해두기 어려운 조치 유형 및 향후 기술등의 발전에 따라 추가될 필요가 있는 조치 등을 하위법령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 기준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 5. 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의 거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한 즉시, 해당 회원 및 이용자에 대한 역무 제공의 거부
	2. 해당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점검 및 이행 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내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방지·차단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명시 다.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 부정사용 차단 및 서비스 이용 기록 보관 등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이용자 관리 라.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의 구축·도입 및 운용 마. 기타 정보통신서비스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3.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등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유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 참고법령:

전자상거래법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절 불법스팸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관련(제50조의6)

1. 개정 이유

현재 불법스팸 차단 및 방지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AI 기반 스팸 차단 시스템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스팸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6을 보다 실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개정 내용

본 개정안에서는 제50조의6 제1항에서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하여 제50조뿐만 아니라 제50조의8 위반행위 역시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수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차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신자”로 한정하였던 보급대상을 삭제하였다.

나아가, 제50조의6 제3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동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도입 권고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의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 4 절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관련(제50조의9)

1. 개정 이유

상술한 바와 같이, 불법스팸 전송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 경제적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즉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개정 내용

가.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본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스팸 전송 행위 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불법스팸 생태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자, 제50조 내지 제50조의8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전제하기 어려운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의 경우, 위탁자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하여 구체적 위반행위를 특정하기 다소 어려운 점, 본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한 제1항(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역시 그 성격상 위반행위자(위탁한 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 행위”만으로 그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50조의4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정 명령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위반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발송 등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즉각적으로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무 준수의 유인을 높였다.

나. 과징금 산정 기준

한편, 과징금 산정 기준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정률 과징금의 부과 비율은 아래와 같은 국내외 유사입법례 및 입법동향을 고려하는 한편, 불법스팸과 관련한 제재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검토의 주된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의 6%로 정하였다.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국내외 유사 입법례	
법령	산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매출액의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매출액의 3%
개인정보보호법	매출액의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매출액의 4~20%(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
대기환경보전법	매출액의 5%
DMA(Digital Markets Act, 유럽)	전세계 매출액의 10%(조직적 위반 20%)
스마트폰 SW경쟁촉진법(일본)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0%(반복위반 30%)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유사 업체의 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제50조의9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때, 정액 과징금은 통상 1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제적 이익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의 적정 액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률 과징금에 상응하는 제재효과를 확보하고 불법스팸 억제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20억원을 정액 과징금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징액과징금 기준금액 관련 유사 입법례	
법령	부과금액
「전기통신사업법」	10억원 이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20억원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억원 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0억원 이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0억원 ~ 200억원

다.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및 기타

이외에, 제50조의9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의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성격과 맥락,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강력한 제재만을 추구하는 ‘제재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50조의9 제3항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 (i)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iii)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례를 나열하면서, 위반행위자의 재정상황(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동기(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모(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자신의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경미한 과실로 일회적인 위반행위를 한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50조의9 제5항), 이외에 미납시의 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제50조의9 제6항 내지 제8항).

한편, 본조 제6항의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과 관련하여, 2025.3. 가산금의 부과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행정기본법」 조항이 신설되어 2026. 3.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상한액 및 상한기간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인 바,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3. 제50조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9.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0.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현행	개정안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9(생략)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5절 몰수·추징 규정 관련(제75조의2)

1. 개정 이유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통한 이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위적 조치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스팸을 전송하는 행위는 모두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분명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향후 반복적 행위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개정 내용

제50조 제5항 위반 및 제50조의8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그에 부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 6 절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관련(제76조)

1. 개정 이유

본 개정안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을 자격이 없는 문자재판매사에게 위탁한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위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근거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제50조의9를 신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 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포섭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위반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되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과도한 중복 제재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2.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중복 제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자가 개정안 제50조의9 제4항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제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 부과로 의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생략)	제76조(과태료) ①(현행과 같음)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신 설>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 ④(생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50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 비교 · 검토

불법스팸 방지와 관련해서는 2024. 9. 5.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최민희 의원안”), 2024. 10. 4.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황정아 의원안”) 등의 주요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한편, 위 최민희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을 포함한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2025. 12.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하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원회 대안의 불법스팸 방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취지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겠다.

제1절 위원회 대안의 불법스팸 방지 관련 주요 내용

위원회 대안은 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하도록 하는 한편, ② 불법스팸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른 불법스팸 전송방지 조치를 구체화하고, ③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0조의3 제1항, 제76조 제1항 제9호의3)
- 정보통신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함(안 제50조의4 제4항)
-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제72조제1항제2호의2 위반(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몰수·추징 근거를 신설함(안 제75조의2)
- 안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7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7조)

제2절 위원회 대안 및 본 보고서상 개정안의 비교·검토

1.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 관련

위원회 대안의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50조의4 제4항).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제2조제1항제7호(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다만,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4. 3.)에서는 본 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바(제41면), 이러한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나도록 성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본 보고서상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2017. 1.)에서는 본 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의 유형을 ① 역무제공 거부조치, ② 정보통신망 취약점 개선조치, ③ 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 ④ 그 외의 필요한 조치로 구분하고 있는바(제17면), 필요한 조치의 세부적인 유형을 위 구분에 따라 구체화하고자 각 호 부분을 신설하였음.
- 이 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2017. 1.)를 참고하여, ① 역무제공 거부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이후 특정 전송자가 다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적 조치”(제4면)로서 제1호에, ② 정보통신망·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는 “정보

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기 쉽도록 하는 결함 내지 허점을 제거 내지 보완하는 등의 사전적·예방적 조치”(제5면)로서 제2호 각 목에 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를, 제2호 마목에 정보통신망 취약점 개선조치 근거 조항을 반영하였고, ③ 그 외의 필요한 조치는 기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과 불법스팸 전송자 또는 관여 사업자 정보의 상호공유 등 조치를 각 의미한다는 점(제16면)이 잘 드러나도록 제3호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그 외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수준에서 미리 정해두기 어려운 조치 유형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현재 법률 수준에서는 사업자간 정보공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었으며 이를 통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위원회 대안	본 보고서상 개정안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의 거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제2조제1항제7호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④ -----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한 즉시, 해당 회선 및 이용자에 대한 의무 제공의 거부 2. 해당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점검 및 이행 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내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방지·차단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명시

위원회 대안	본 보고서상 개정안
	<u>다.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 부정사용 차단 및 서비스 이용 기록 보관 등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이용자 관리</u> <u>라.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의 구축·도입 및 운용</u> <u>마. 기타 정보통신서비스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의 점검 및 취약점 개선</u> <u>3.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등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⑤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유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u>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위원회 대안에서와 달리 본 보고서상 개정안은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50조 뿐만 아니라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 차단 또는 신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제50조의6 제1항, 제3항).

3.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위원회 대안의 경우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위반행위 일체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안 제50조의9 제1항).

본 보고서상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다소 폭넓게 도입하여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규범 준수의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대안과 유사하게 위반행위 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로 포함하였다. 다만, 각 조항별로 규정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내용	위원회 대안	본 보고서상 개정안
부과 대상	- 제50조 - 제50조의4 - 제50조의5 - 제50조의7 - 제50조의8	-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 - 제50조 제4항 - 제50조 5항 - 제50조 제6항 - 제50조 제7항 - 제50조 제8항 - 제50조의4 제4항 - 제50조의5 - 제50조의7 제1항, 제2항 - 제50조의8

한편 본 개정안에서 불법스팸 관련 조항 중 과징금 부과 범위에서 제외한 조항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제50조의3: 위탁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보이는 점, 나아가 관리·감독 의무 위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 추가한 제1항(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의 경우 그 성격상 위반 행위자(위탁한 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그 이익의 환수를 강제하는 것은 비례성을 다소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산정기준

위원회 대안 및 본 보고서상 개정안은 모두 전체 매출액의 6% 이하를 정률 과징금의 기준으로, 20억원 이하를 정액 과징금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특히,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제1호(50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20억원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 제1항(10억원 이하) 등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스팸 전송의 유인을 없애기 위해 실효적인 액수의 경제적 제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억원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만, 위원회 대안 제50조의9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에도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제50조, 제50조의7, 제50조의8 위반 행위자도 포함되므로, 본 보고서상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업자”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상 개정안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자의 재정상황, 위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제50조의9 제4항).

제6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예방 및 방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제재 규정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불법스팸의 위법성과 그 경제적 유인의 차단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위반행위 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여 제재 수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는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한편, 합리적 부과 기준을 설정하여 과도한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률 과징금의 기준 설정 및 정액 과징금의 결정, 과징금 부과 시의 고려 요소 등 과징금 제도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처럼 상향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근거가 되는 의무규정의 법적 명확성이 분명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불법스팸과 관련한 주요 의무규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행위 등 사실을 인지할 경우 역무제공 거부조치,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수범자인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의무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 적용 및 제재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특히 실무 담당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요구하여야 할 조치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법스팸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책임 비례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불법스팸 규제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향후 불법스팸 근절에 유의미한 요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손종모, 임효창,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제19권 제6호(2021. 1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4. 3.).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2017. 1.)

관계부처합동, “정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 12. 제안, 의안번호 14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024. 9. 5. 제안, 의안번호 2203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의원 등 13인), 2024. 10. 24. 제안, 의안번호 2204539.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삭제 <2014. 5. 28.>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 5. 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와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

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제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보칙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벌칙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 2. 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록 2] 불법스팸 관련 규제 법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발췌)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제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팩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부록 3] 불법스팸 관련 규제 법령－「전기통신사업법」(발췌)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업무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

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6.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록 4] 불법스팸 관련 규제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발췌)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 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등록 조건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구분	등록 요건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2)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 「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가)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나)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만 해당한다) 4)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5)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1)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다.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라. 사업 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호 계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나) 저작권 위반 시 처리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와 그 이행계획 다)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4)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2)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4)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 경로 확인·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다.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5천만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상
라. 사업 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호 계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마. 이용자 보호 계획서	(4)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

[부록 5] 불법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

법률 개정(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 ⑧ (생략)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 삭제 <2014. 5. 28.>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 탁 등)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 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 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 탁 등)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 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 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 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의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 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 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 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 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 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 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의 거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 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 는 사정을 인지한 즉시, 해당 회선 및 이용 자에 대한 역무 제공의 거부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2. 해당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점검 및 이행 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내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방지·차단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명시 다.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 부정사용 차단 및 서비스 이용 기록 보관 등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이용자 관리 라.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의 구축·도입 및 운용 마. 기타 정보통신서비스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3.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등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유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생략)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발송되는 광고성 정

현 행	개 정 안
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 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보 전송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의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 ③ (생략)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생략)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현행과 같음)
<신설>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3. 제50조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9.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0.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현 행	개 정 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4. 그 밖에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 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현 행	개 정 안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 ③(생략) <u><신 설></u>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의무 제공의 거부 조치를 취한 경우,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 사실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② ~ ④(생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 ④(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신설안	비고
제62조의4(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의 유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세부기준을 고시를 통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참고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4조의2(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과 산정기준) ① 법 제5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 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세부화하고 있는 유사 입법 선례 중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를 참조 하였음. • 이외에, 본 조 제4항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고시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등)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참조). ※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 신설안	비고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9제5항제4호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0조의9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	-

시행령 신설안	비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9항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												
[별표 3의2]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을 위한 조치의 유형, 기준 및 방법(제62조의4 관련) 1. 역무제공 거부조치(법 제50조의4제4항 제1호) 가. 조치 기준 정보통신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한 시점(예: 기관을 통한 신고 접수, 사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한 인지 등)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내 나. 조치 방법 해당 회선 및 이용자에 대한 역무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조치, 계약 해지 2. 정보통신망·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법 제50조의4제4항제2호) 가. 조치 기준 정보통신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조치 방법	• 시행령 제62조의4에 언급된 시행령 별표 3의2에는, (i) 법 개정안 제50조의4 제4항 각 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의 유형을 전제로 하여 (① 역무제공 거부조치, ② 정보통신망·서비스 취약점 개선조치, ③ 그 외의 필요한 조치로 크게 구분), (ii)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2017. 1.)의 별표 1 내용을 참고하여 각 조치별로 대략적인 유형,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법 개정안 제50조의4 제4항 제3호에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더하여 “그 외의 필요한 조치”로서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필요한 조치)</th></tr> </thead> <tbody> <tr> <td>정보통신망 취약점 개선</td><td> 1. 문자발송 시스템에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을 구축할 것 2.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 </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필요한 조치)	정보통신망 취약점 개선	1. 문자발송 시스템에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을 구축할 것 2.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	※ 참고자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 (2017. 1.) 별표 1 필요한 조치 정리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필요한 조치)</th></tr> </thead> <tbody> <tr> <td>역무제공 거부</td><td>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td></tr> <tr> <td>정보통신망 취약점</td><td> 1) 번호 번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팩스 사업자가 웹팩스 전송 및 부가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원발신 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3) 모니터링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td></tr> <tr> <td>서비스</td><td>1)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른 명의자에</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필요한 조치)	역무제공 거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정보통신망 취약점	1) 번호 번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팩스 사업자가 웹팩스 전송 및 부가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원발신 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3) 모니터링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서비스	1)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른 명의자에
구분	내용(필요한 조치)												
정보통신망 취약점 개선	1. 문자발송 시스템에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을 구축할 것 2.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												
구분	내용(필요한 조치)												
역무제공 거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정보통신망 취약점	1) 번호 번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팩스 사업자가 웹팩스 전송 및 부가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원발신 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3) 모니터링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서비스	1)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른 명의자에												

시행령 신설안		비고			
	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3. 이용자의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중인증 방식을 적용할 것 4.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과 불법 로그인 시도 시 경고기능 등 비인가자의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5. 이용자 접속기록, 인증기록, 문자발송 이력, 과금이력 로그 및 문자발송 시스템 접속기록, 문자발송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그 등을 6개월 이상 보관할 것 6. 이용자 로그 및 문자발송 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월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할 것 7. 스팸방지를 위한 금칙어, 악성 URL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차단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2개월) 보관할 것 8. 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모니터링할 것	취약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KAIT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5)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사실 확인 및 외부 감독기관의 불법스팸 전송 사실에 대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차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6) 이메일 스팸 발송 시도에 대한 전송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 7)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신원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8) 부정 사용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그 외 필요한 조치		1) 타법에서 요구하는 스팸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간 자율 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참고자료 특부가사업자 전송자격인증 요건(안)					
서비스 취약점 개선	1. 서류 적정성	분야	항목	상세 기준	
		1.1	사업자 확인	전송자격인증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여야 한다.	
			1.2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는 불법스팸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사무실 확보 증명서

시행령 신설안

거주자, 해외법인 등의 경우 필요서류를 받아 관리자 확인 후 허용할 수 있음)

4. 발신번호의 명의자(이용자)와 이용료 납부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할 것

5. 이용자 계정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1인당 계정은 1개로 제한하되, 계정당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는 개인인 경우 3회선(외국인은 2회선), 법인인 경우 4회선으로 제한할 것

6. 불법스팸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관련 발신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보관할 것

3. 그 외의 필요한 조치(법 제50조의4항제3호)

구분

내용(필요한 조치)

그 외 필요한 조치

1. 하위 재판매사의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중개사업자 간 스팸 전송 사업자 정보 및 관리 미흡 재판매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운영할 것

2. 스팸 전송 사업자 및 관리 미흡 재판매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강화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등 스팸 차단을 위한 통제를 적용할 것

3. 그 밖에 스팸 전송 사업자 및 관리 미흡 재판매사에 대하여, 통신회선 전송 속도 저하 또는 문자발송량 제한 등 스팸 전송 개선 조치를 적용할 것

비고

분야

항목

상세 기준

1.4

불법스팸 발송 방지 계획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문자발송 시스템 운영,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계약해지, 발송정지 등 불법스팸 방지계획서가 적정하여야 한다.

2.1

계정관리

이용자 계정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이용자 1인당 계정은 1개 나. 계정당 등록 가능한 무선발신번호는 개인인 경우 3회선(외국인은 2회선), 법인인 경우 4회선 다. 계정당 등록 가능한 유선발신번호(인터넷전화 등)는 개인인 경우 5회선, 법인인 경우 종사자 수

2.2

국외 이용자

국외 IP는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해외법인 등의 경우 필요서류를 받아 관리자 확인 후 허용한다.

2.3

부정사용 차단

발신번호의 명의자(이용자)와 이용료 납부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3.1

방화벽 설치

문자발송 시스템에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을 구축하여야 한다.

3.2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3

접근권한 변경의 적정성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문자전송 시스템

시행령 신설안		비고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3.4	다중 인증	이용자의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중 인증 방식을 적용하고,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과 불법 로그인 시도 시 경고기능 등 비인가자의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5	추가 인증(발송 인증)	문자 발송 시 해당 발신번호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발송 계정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기록 관리의 적정성	4.1	이용자 로그 관리	이용자 접속기록, 인증기록, 문자발송 이력, 과금이력 로그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4.2	시스템 로그 관리	문자발송 시스템 접속기록, 문자발송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로그,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이력 관련 로그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4.3	로그 점검	이용자 로그 및 문자발송 시스템 로그는 주기적으로(월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 조치 적정성	5.1	조치 및 결과확인	불법스캠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또는

시행령 신설안	비고												
	<table><tr><th colspan="2">분야</th><th>항목</th><th>상세 기준</th></tr><tr><td></td><td></td><td></td><td>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관련 발신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보관하여야 한다.</td></tr><tr><td></td><td></td><td>5.2 금칙어 등 차단 체계 운영</td><td>스팸방지를 위한 금칙어, 악성 URL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차단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td></tr></table>	분야		항목	상세 기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관련 발신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5.2 금칙어 등 차단 체계 운영	스팸방지를 위한 금칙어, 악성 URL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차단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분야		항목	상세 기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관련 발신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5.2 금칙어 등 차단 체계 운영	스팸방지를 위한 금칙어, 악성 URL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차단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3의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64조의2제5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50조의9제1항제[*]호, 제[*]호에 따른 행위: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 이하 나. 법 50조의9제1항제[*]호, 제[*]호에 따른 행위: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 이하 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이하 “중대성의 정도”라 한다)에 따라 산정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0조의9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별표 6], [별표 9], [별표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였음. • 최대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노란색 표시한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참고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제30조의7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시행령 신설안	비고																
을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9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추가적 가중·감경 정보통신서비스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준금액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위반행위의 중대성</th><th>과징금의 산정비율</th></tr>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1천분의 27</td></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td>1천분의 21</td></tr> <tr> <td>보통 위반행위</td><td>1천분의 15</td></tr> </table> 2) 제30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h>위반행위의 중대성</th><th>기준금액</th></tr>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9억원</td></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td>7억원</td></tr> <tr> <td>보통 위반행위</td><td>5억원</td></tr> </table>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 감경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징금의 산정비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보통 위반행위	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징금의 산정비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보통 위반행위	5억원																

시행령 신설안	비고
	(제46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이하 “중대성의 정도”라 한다)에 따라 산정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의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신설안	비고
	2) 필수적 가중·감경 가) 기준금액에 법 제5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감정한 금액을 합산하되, 가중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9] <u>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u>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시행령 신설안	비고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 (생략) ※ 참고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징금 금액</th></tr><tr><td>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td><td>법 제67조 제2항제2호</td><td>2억원 이내</td></tr><tr><td>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td><td>법 제65조 제4항 전단</td><td>10억원 이내</td></tr><tr><td>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67조 제2항제1호</td><td>6억원 이내</td></tr></table> ※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2호	2억원 이내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법 제65조 제4항 전단	10억원 이내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1호	6억원 이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2호	2억원 이내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법 제65조 제4항 전단	10억원 이내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1호	6억원 이내											

시행령 신설안	비고																				
	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위반행위의 중대성</th><th>부과기준율</th></tr>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1% 이상 2.7% 이하</td></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td>1.5% 이상 2.1% 미만</td></tr> <tr> <td>보통 위반행위</td><td>0.9% 이상 1.5% 미만</td></tr> <tr> <td>약한 위반행위</td><td>0.03% 이상 0.9% 미만</td></tr> </table>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h>위반행위의 중대성</th><th>기준금액</th></tr>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td></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td>2억원 이상 7억원 미만</td></tr> <tr> <td>보통 위반행위</td><td>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td></tr> <tr> <td>약한 위반행위</td><td>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td></tr> </table>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마)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행령 신설안	비고																		
	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th></tr><tr><th>1회</th><th>2회</th><th>3회</th></tr><tr><td>가.~노.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r><tr><td>노의2. 법 제 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td><td>법 제76조 제 1 항 제9호의3</td><td>750</td><td>1,500</td><td>3,000</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가.~노. (현행과 같음)					노의2. 법 제 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법 제76조 제 1 항 제9호의3	750	1,500	3,000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가.~노. (현행과 같음)																			
노의2. 법 제 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법 제76조 제 1 항 제9호의3	750	1,500	3,000															

시행령 신설안					비고
위탁한 경우					
도.~우. (현행과 같음)					

고시 제정(안)

〈가칭〉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0조의9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9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제3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table><tr><th>위반행위의 중대성</th><th>부과기준율</th></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1% 이상 2.7%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5% 이상 2.1% 미만</td></tr><tr><td>보통 위반행위</td><td>0.9% 이상 1.5% 미만</td></tr><tr><td>약한 위반행위</td><td>0.03% 이상 0.9% 미만</td></tr></table> ② 영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tr><th>위반행위의 중대성</th><th>기준금액</th></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2억원 이상 7억원 미만</td></tr><tr><td>보통 위반행위</td><td>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td></tr><tr><td>약한 위반행위</td><td>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td></tr></table>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3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정보주체 등의 진술, 동종·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①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4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시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3.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제3조의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 1]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

여 기준금액에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6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

1.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는 경우

2.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제7조(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 ①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재화·서비스의 종류·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2.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별개의 재화·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범주·특성
4.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용약관·약관 등에서 규정한 재화·서비스의 범위

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최근 3년간 법 제50조의9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최근 3년간 법 제50조의9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2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3. 3회 이상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최근 3년간 법 제50조의9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3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④ 재화·서비스의 유형·이용 방식 등이 유사하면 공급 또는 제공되는 지역·범위 등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⑤ 재화·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및 동종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1의5] 제2호각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1차 조정) (생략)

제10조(2차 조정) (생략)

제11조(부과과징금의 결정) ①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서 정한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하되 각 가중·감경의 범위는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경제위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산정된 과태료 금액보다 적은 경우(위반행위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인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⑤ 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등 산정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르며,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제5조제1항 관련)

부과수준 고려사항	상	중	하
고의·과실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의 방법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로 인한 피해 규모 및 미치는 영향	현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고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3.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방법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 및 동의 획득·관리 절차의 적정성, 수신거부(옵트아웃) 기능의 제공 및

※ 참고법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2-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면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6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서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

이행 여부, 전송수단·전송방식의 위법성(번호 생성·수집, 자동발송 프로그램 사용 등), 전송 빈도 및 지속성, 위반행위가 내부적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 및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및 미치는 영향 피해 규모, 위반기간, 피해자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별표 2]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1.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다

가.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

2.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②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필요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다.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성 정보 전송 우수 사업자로서 인정하는 인증(전송자격 인증 제외)을 받은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②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공유, 상호협력을 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라.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④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의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 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영업 중단,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의무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

	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정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록 6]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발체)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신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업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제2항----- ----- ----- -----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 -----.
<신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신설>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신설>	3. 제2조제1항제7호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신설>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신설>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신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 ----- -----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신 설>	9의4. (현행 제9호의3과 같음)
10. ~ 12.(생 략)	10. ~ 12.(현행과 같음)
② ~ ④(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저 자 소 개 ●

허 승 진

- 고려대학교 졸업
- (前)방송통신위원회 변호사
- (現)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 그룹 파트너 변호사

김 시 온

- 성균관대학교 졸업
- (前)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행정관 재직
- (現)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 그룹 소속 변호사

양 희 원

- 서울대학교 졸업
- 전 언론중재위원회
- (現)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 그룹 소속 변호사

박 상 현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 (現)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 그룹 소속 변호사

홍 인 기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現)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 그룹 소속 변호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MCC-2025-13

불법스팸 발송자 및 역무제공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

(A Study on Legal Framework for Disgorgement
of Unjust Enrichment from Illegal Spam Senders
and Service Providers)

2025년 12월 일 인쇄

2025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mcc.go.kr

인쇄 인성문화
